

2020.9.14.~9.17./ 4일간

제32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심사결과

의안명	심사결과
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원안가결
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	원안가결
2020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(안)	원안가결
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	원안가결
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장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수정가결
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	수정가결

주요내용

1.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- 제출일자 : 2020. 8. 26.
- 제안자 : 고재진 의원 대표발의
- 제안이유
 - 의장·부의장 결선투표 결과에 대한 당선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
- 주요내용

단서 조항 신설(제8조제3항)

(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당선자 결정)

- 당 초 :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
- 변 경 : 최다선의원 당선자로 한다. 다만, 최다선의원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.
 - 1.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재직기간이 긴 의원
 - 2.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: 그 중 연장자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2.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

- 제출일자 : 2020.9. 8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(주민복지과장)
- 제안이유
 - 지역사회의 특성을 감안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직영으로 운영 중인 공공실버주택 복지관을 전문지식과 책임성,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자원개발사업 등을 통해

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■ 주요내용

가. 위탁범위
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위탁사항
 - 공공실버주택 복지관 시설관리(이용시설 안전점검 등)
 - 공공실버주택 복지관 운영 인력관리(사회복지사 등)
 - 프로그램 운영(사례관리, 서비스제공, 무료급식사업 등)

나. 시설현황

- 시설명 :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복지관
- 위 치 : 장성군 장성읍 청운11길 11 / 공공실버주택 1층
- 규 모 : 710㎡(210평)/노유자시설
- 주요시설

구분	면 적	세 부 시 설	비고
1층	710㎡	사무실, 경로당2, 찜질방2, 다목적강당, 식당 취미실2, 건강관리실, 자원봉사실, 관장실	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3. 2020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- 제출일자 : 2020. 9. 8.
- 제 안 자 : 장성군수(문화관광과장)
- 제안이유
 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
- 주요내용

○ 변경사유

- (수입) 체육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당해연도 이자수입 반영
 - 광주은행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(1.65% → 1.15%)
- (지출) 체육진흥기금 예치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세출계획 변경

○ 기금 결산

(단위: 천원)

2019년도말 조성액(A)	2020년 조성계획						2020년도말 조성액 (A+D)		비고
	수 입(B)		지 출(C)		증 감(D=B-C)				
	경정	기정	경정	기정	경정	기정	경정	기정	
1,598,288	321,000	327,000	21,000	27,000	300,000	300,000	1,898,288	1,898,288	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4.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계획안

- 제출일자 : 2020. 9. 8.
- 제 안 자 : 장성군수(재무과장)
- 제안이유

○ 지방재정법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함.

■ 주요내용

【 법인카드 현황 】

- 카드종류 : 3종(법인카드, 공무원 복지카드, 보조금카드)
- 제휴기관 : 군, 농협은행, BC카드(주) / 제휴일 : 2006. 6. 12.
- 적 립 금 : 41,628천원(2019. 1월 ~ 12월 사용분)
 - 법인카드(이용금액 1.0%) / 보조금카드(이용금액 0.5%) : 28,872천원
 - 공무원 복지카드(이용금액 0.3%) : 12,756천원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5.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20. 8. 26.
- 제 안 자 : 차상현 의원 대표발의
- 제안이유
 -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
- 주요내용
 - 정의 (안 제2조)
 - 군수의 책무 (안 제3조)
 - 적용범위(안 제4조)
 - 예우 및 홍보(안 제5조)
 - 우대(안 제5조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6. 장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0. 9. 8.
- 제 안 자 : 장성군수(농업축산과장)
- 제안이유
 -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육성과 고품질 안정 농산물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함
- 주요내용
 - 목적, 용어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 - 자연순환농업 육성목적, 용어정의

-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보급(안 제3조~안 제7조)
 -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 수립
 -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역할
 - 기술개발, 보급, 교육 지원 및 기술교류, 홍보
- 자연순환농업 지원(안 제8조~안 제14조)
 -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
 - 예산지원 범위,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, 유공자포상

■ **의결결과 : 수정가결**

■ **수정내용**

조례안 제9조(경영안정 지원)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에서 “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” 을 “지원할 수 있다” 로 수정 가결함

7.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**제출일자** : 2020. 9. 8.
- **제 안 자** : 장성군수(원예소득과장)
- **제안이유**
 -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.
- **주요내용**
 - 육성계획의 수립(안 제3조)
 - 지역 실정을 반영한 아열대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·시행
 - 실태조사(안 제4조)
 -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 실시
 - 사업 지원(안 제5조)
 -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

있음.

- 교육 및 컨설팅 등(안 제6조)
 -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.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 - 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학계,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.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8.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
- 제출일자 : 2020. 9. 8.
- 제 안 자 : 장성군수
- 주요내용

예산안 총괄

○ 규 모 : 493,836,160천원

○ 회 계 별

- 일반회계 : 481,721,540천원

- 특별회계 : 12,114,620천원

○ 예산안 내역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
합 계	493,836,160	457,769,304	36,066,856
일반회계	481,721,540	446,477,106	35,244,434
특별회계	12,114,620	11,292,198	822,422

- 의결결과

- 일반회계 세입예산 : 원안 가결
- 일반회계 세출예산 : 수정 가결(수정 세부내역 별첨)

- 제출 예산액 : 481,721,540천원
- 삭 감 액 : 230,000천원
- 수정 예산액 : 481,721,540천원

○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: 원안가결

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내역

1. 세 입 : 493,836,160천원

가. 삭감(일반+특별) : 해당없음

나. 증액(일반+특별) : 해당없음

다. 회계별 수정내역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산 요구액 (제출 예산액)	심 사 결 과			인정액
		삭감액	증 액	순삭감액	
계	493,836,160	230,000	230,000	-	493,836,160
일반회계	481,721,540	230,000	230,000	-	481,721,540
특별회계	12,114,620	-	-	-	12,114,620

라. 삭감조서 : 해당없음

마. 증액조서 : 해당없음

2. 세 출 : 493,836,160천원

가. 삭 감

1) 일반회계 : 230,000천원

2) 특별회계 : 해당없음

나. 증 액

1) 일반회계 : 해당없음

2) 특별회계 : 해당없음

다. 회계별 수정내역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산 요구액 (제출 예산액)	심 사 결 과			인정액
		삭감액	증 액	순삭감액	
계	493,836,160	230,000	230,000	0	493,836,160
일반회계	481,721,540	230,000	230,000 (재해·재난 목적예비비)	0	481,721,540
특별회계	12,114,620	0	0	0	12,114,620

라. 삭감조서 : 붙임과 같음

1) 일반회계 삭감조서

(단위 : 천원)

쪽	예산과목	사 업 명	요구액	삭감액	인정액
	계	2 건	230,000	230,000	
203	401-01	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실시설계	210,000	210,000	0
235	207-02	노인놀이터 노인용역비	20,000	20,000	0

2) 특별회계 삭감조서

(단위 : 천원)

쪽	예산과목	사 업 명	요구액	삭감액	인정액
		해당없음			

마. 증액조서

1) 일반회계

-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 : 230,000천원(증)

2) 특별회계 : 해당없음